

공직자윤리법등개정건의안

의안번호	197
의 길 년 월 일	93. 9. 10 (제22회)

발의년월일 : 93. 9. 10

발 의 자 : 박상규의원외 인

1. 주 문

- 부천시의회 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동참해 오면서 의정활동 수행과정과 특히,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등록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비현실성과 공직자윤리법의 불합리성 등 관계법의 일부가 지방의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건의대상기관 : 중앙정부, 국회, 국회교섭단체정당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조는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은 지방의원에게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지방의회 의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어 권리와 의무에 따른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인 지방의회 의원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 사료된다.
- 우리는 위와같은 사유로 관계법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것임.

건 의 문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동참하여 시민의 진정한 바램을 이루고 지역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개원 이후 2년 5개월동안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이 출범한 문민시대를 맞아 사회전반의 개혁이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힘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특히,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등록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의 비현실성과 공직자윤리법의 불합리성이 지방의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만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명시된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고 있어, 이 조문은 지방의원에게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는데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제10조에 등록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동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는 취업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 취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모순되는 것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의 욕구를 구속 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만 보더라도 기초의회 의원은 정부4급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공개 대상은 1급이상인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이 상호 모순된 대우를 받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관계규정 중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니,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우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관계법이 틀림없이 개정되기를 관계기관과 정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1993. 9. 10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